| 의안번호 | 제 462 호 |
|---|---|
| 의 결<br>연 월 일 | 2010년 2월 일<br>(제 286 회) |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이규완 의원외 7인 |
|---|---|
| 발의연월일 | 2010년 1월 15일 |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규완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462 |
|---|---|

발의연월일 : 2010. 1. 15.
발 의 자 : 김인수·이언구·오용식 한창동·이기동·김법기·이규완·김화수(8인)

## 1. 개정이유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및 하도급 등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를 위하여

○ 대규모 공사의 분할발주,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지역업체 공동·하도급 참여 등을 권고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공사의 분할발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5조)

나.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권장사항 신설(안 제7조)

라.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공동도급 비율 49%, 하도급 비율 5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 신설(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입법예고 : 2009. 12. 7~12.26(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다. 관계법령 발췌 : 별첨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5조 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 ① 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도지사는 지역자재 구

매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 참여와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과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하고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의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설> | **제5조(분할발주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7조제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br>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
| <신설> |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7조의 2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신설> |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도지사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r>②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 <신설> |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br>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br>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br>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br>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br>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 제5조 부터 제13조 | 제9조 부터 제17조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8조(구성)<br>① (생략)<br>② ----------건설교통국장---------- ----------.<br>1. (생략)<br>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br>3.~5. (생략) | 제12조(구성)<br>① (현행과 같음)<br>②----------건설방재국장---------- ----------.<br>1. (현행과 같음)<br>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br>3.~5. (현행과 같음) |
| | |

#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일부개정 2009.8.21 대통령령 제21698호]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9.20, 2008.12.31>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9.5.21 법률 제9685호 시행일 2009.11.22]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적용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 공사 및 용역의 범위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 - 57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2. 대상금액 : 공사 229억원이상, 물품 · 용역 3.1억원이상**

##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자치부 고시 2006-43호의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폐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 227 호(2009. 3. 13 )

## 제2장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Ⅰ. 목적

이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경쟁계약의 집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나.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거나, 계약방법, 입찰공고의 방법, 내역입찰 등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Ⅱ. 제한경쟁의 범위와 구분

| 제한의 종 류 | 계 약 목적물 | 제 한 요 건 | 비 고 |
|---|---|---|---|
| ④지역제한 | 공사 | ■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br>■ 전문공사 : 추정가격7억원 미만<br>(다만,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br>■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기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
| | 물품·용역 | ■ 시·도에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3.1억원미만<br>■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 5억원 미만<br>■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2억원 미만<br>■ 안전진단용역 :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 물품·용역의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 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1호]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타)일부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 제89호]

**제27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5.6.3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 227 호(2009. 3. 13 )

##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Ⅰ. 목적

이 장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함)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Ⅲ.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서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1) 당해 공사예정금액의 40%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공시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미만인 경우

2) 40%이상지역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일부개정 2009.8.21 대통령령 제21698호]

**제88조(공동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8.5>

1.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법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공사

나. 법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2.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9.5.21 법률 제9685호 시행일 2009.11.22]

**제29조(공동계약)** ②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 간의 공동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